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1. 진료를 거부 당하는 차별
2. 바라지 않는 진료를 거부할 권리
3.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차별
4. 적절한 정보

제1조 (정의)

- ① 이 법에 의한 "건강권"이라 함은, 사회 참여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하여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장애와 무관하게 또는 장애를 보완할 필요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가질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의료권"이라 함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라 함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 ④ "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정신과 의사, 영유아 의사, 노인 의사, 보육 의사, 치과 의사)
- ⑥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 ⑦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⑧

③ 의료기기법 제2조 1항

1.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④ 장애인복지법 제55조(재활보조기구)
- ⑤ 의료법 제2조 1항
- ⑥ 의료법 제3조 제1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⑦ 의료급여법 제2조 2호 / 의료급여법 제9조

제2조 (건강권 및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제3조 (건강권 및 의료권에서의 권리)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심신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이룩하기 위한 건강 유지 및 의료권에 대하여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갖는다.
- ② 장애인은 건강권 및 의료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심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갖는다.
- ③ 장애인은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 및 보조기구를 마련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갖는다.

1. "추가비용"정의?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4조(의료인의 의무)

- ① 의료인 및 장애관련 전문가 들은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보호의무가 있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권 및 건강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정신건강의료 및 식품위생·영양 등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책에서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요구를 반영하고, 전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특성에 따른 의료권 보장 및 건강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개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의 대상으로 장애에 관한 감수성을 신장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및 욕구에 대한 존중감 신장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권 및 의료권에서의 차별행위)

차별행위의 실효를 지양.

차별행위.